

# 용인 버스킨 아티스트 활동 규정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(이하 '재단'이라고 한다)이 운영하는 용인버스킨 아티스트(이하 '아티스트'라고 한다)의 활동규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(1) 용인의 주요 거리에서 점진적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확대를 위하여 거리예술의 창작활성화 기여
- (2)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창작기반 마련으로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
- (3) 용인의 대표축제 및 행사와 연계하여 용인의 대표 문화아이콘 창출

**제2조 (활동시기)** ① 아티스트는 연중 상시적 문화예술 활동으로 지속적인 창작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며, 매년 활동의 기수는 3월에 시작하여 동년도 11월에 종료됨으로 정한다.

② 동절기(12~2월)에는 사업의 연속성 유지 및 아티스트의 공연환경의 안전을 위하여 공연을 행하지 않는다.

**제3조 (활동장소)** ① 용인의 주요거리 및 문화예술의 거점을 연계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다.

② 아티스트는 용인의 대표축제 및 행사와 연계하여 재단이 정한 용인의 대표적 거리에서 시행할 수 있다.

**제4조 (성실활동의 의무)** ① 아티스트가 활동하는 분야는 극, 음악, 무용, 전통, 시각예술, 문화일반 등 거리예술이 가능한 문화예술의 장르로 정한다.

② 아티스트는 재단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거리예술 활동을 시행한다.

③ 아티스트는 활동 시 주변 관객통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.

④ 아티스트는 활동 시 음향사용에 있어 소음기준(75db)을 준수하여 한다.

⑤ 활동 중 공식 증명서 부착이 가능하고 시민에게 자발적인 문화예술활동 감상비를 수령한다.

⑥ 아티스트는 용인을 대표하는 용인버스킨 아티스트로서 공인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.

**제5조 (활동평가 및 지원)** ① 아티스트 활동평가는 활동실적 및 현장평가에 근거하며, 평가기준은 공연횟수, 공연수준, 시민호응도, 기타(행정평가)로 구성한다.

② 활동지원은 평가에 근거하여 정하며, 그 지원의 내용은 재단이 정한다.

**제6조 (자격정지 및 취소)** 아티스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그 자격이 정지 혹은 취소된다.

- (1) 공연이 종교 및 정치적 내용을 포함하거나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어 민원이 제기될 때
- (2) 공연자가 상행위 및 성실활동의 의무위반으로 재단의 활동규정을 위반할 때
- (3) 2개월간 활동실적이 없거나 향후 활동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재단이 판단할 때
- (4) 아티스트가 활동의 중지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때